

6) 취업을 원하는 직종

〈표 53〉 희망 취업 직종

항 목	유 형 별	실직자 유형			전 계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 실업자		
희망직종	전문가	응답	7	21	12	40
	기술자	%	5.2%	7.5%	4.6%	5.9%
사무직	응답	12	24	13	49	
	%	9.0%	8.6%	5.0%	7.3%	
서비스 판매직	응답	21	40	23	84	
	%	15.7%	14.3%	8.8%	12.5%	
농, 어업	응답	-	3	-	3	
	%	-	1.1%	-	.4%	
기계조립 기능직	응답	23	37	18	78	
	%	17.2%	13.2%	6.9%	11.6%	
단순 노무	응답	16	40	13	69	
	%	11.9%	14.3%	5.0%	10.2%	
노점, 좌판	응답	1	1	3	5	
	%	.7%	.4%	1.2%	.7%	
관리행정	응답	2	3	2	7	
	%	1.5%	1.1%	.8%	1.0%	
아무거나	응답	15	17	16	48	
	%	11.2%	6.1%	6.2%	7.1%	
무응답	응답	37	94	160	291	
	%	27.6%	33.6%	61.5%	43.2%	
합	응답	134	280	260	674	
	%	100.0%	100.0%	100.0%	100.0%	

p=.000

○ 희망직종을 언급하지 않은 실망실업자를 제외하면 서비스 판매직과 기계조립·기능직이 가장 많은 상태로 나타난다.

7) 희망업종

〈표 54〉 희망업종

항 목	유 형 별	실직자 유형			전 계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희망업종	서비스업	응답	36	89	52	168
		%	26.9	31.9	20.0	24.9
제조업	응답	38	63	26	127	
	%	28.4	22.5	10.0	18.8	
농림어업	응답	1	3		4	
	%	.7	1.1		.6	
아무거나	응답	22	30	22	74	
	%	16.4	10.7	8.5	11.0	
무응답	응답	37	95	160	292	
	%	27.6	33.9	61.5	43.3	
합	응답	134	280	260	674	
	%	100.0	100.0	100.0	100.0	

p=.000

8) 희망 종사형태

〈표 55〉 희망종사형태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계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희망종사 형태	정규직	응답	73	138	62	273
		%	54.5	49.2	23.8	40.5
	임시직	응답	2	2	2	6
		%	1.5	.7	.8	18.8
	일용직	응답	9	19	12	40
		%	.7	1.1		.6
	자영업자	응답	22	30	22	74
		%	16.4	10.7	8.5	11.0
	무급가족 종사자	응답	-	-	1	1
		%	-	-	0.4	0.1
	아무거나	응답	7	8	9	24
		%	5.2	2.9	3.5	3.6
	무응답	응답	37	93	160	290
		%	27.6	33.2	61.5	43.0
합	응답	134	280	260	674	
	%	100.0	100.0	100.0	100.0	

p=.000

○ 실직 장애우는 당연히 향후 재고용될 시에는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다.

9) 희망 보수 수준

〈표 56〉 희망보수수준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계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희망보수	30만원 미만	응답	-	1	3	4
		%	-	0.5	2.4	0.9
	30-50만원 미만	응답	3	15	11	29
		%	2.6	7.2	8.7	6.4
	50-100만원 미만	응답	79	146	91	316
		%	67.5	70.2	72.2	70.1
	100-150만원 미만	응답	33	36	20	89
		%	28.2	17.3	15.9	19.7
	150-200만원 미만	응답	2	5	-	7
		%	1.7	2.4	-	1.6
	200만원 이상	응답	-	5	1	6
		%	-	2.4	0.8	1.3
	합	응답	117	208	126	451
		%	100.0	100.0	100.0	100.0

p=.020

○ 실업장애우가 원하는 임금의 수준은 평균 747천원이며 유형별로는

- IMF형 실직자 780천원
- IMF 이전실직자 763천원
- 만성실업자 690천원 등으로 나타난다.

6.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반응 및 효과

1) 생활보호사업

(1)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표 57〉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사업을 알고 있는가	예	응답	96	214	153	463
		%	72.2	77.0	60.5	69.7
	아니오	응답	37	64	100	201
		%	27.8	23.0	39.5	30.3
합		응답	133	278	253	664
		%	100.0	100.0	100.0	100.0

p=.000

(2) 생활보호사업신청 여부

〈표 58〉 생활보호신청 여부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사업 신청여부	신 청	응답	68	174	123	365
		%	65.4	72.5	69.9	70.2
	미신청	응답	36	66	53	155
		%	34.6	27.5	30.1	29.8
합		응답	104	240	176	520
		%	100.0	100.0	100.0	100.0

p=.413

(3) 신청한 생활보호사업의 종류

〈표 59〉 신청 생활보호사업 종류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어느생활보호 사업을 신청 하였나	일반생활 보호사업	응답	39	130	85	254
		%	58.2	75.6	70.2	70.6
	한시적생활 보호사업	응답	28	42	36	106
		%	41.8	24.4	29.8	29.4
합		응답	67	172	121	360
		%	100.0	100.0	100.0	100.0

p=.030

(4) 생활보호사업 신청후 수혜 여부

〈표 60〉 생활보호사업 신청후 수혜 여부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사업 수혜여부	수 혜	응답	55	139	86	280
		%	75.3	79.0	72.9	76.3
	탈 락	응답	18	37	32	87
		%	24.7	21.0	27.1	23.7
합		응답	73	176	118	367
		%	100.0	100.0	100.0	100.0

p=.473

(5) 지원액의 규모(월 기준)

〈표 61〉 지원액의 월 규모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지 원 액	5만 미만	응답	2	7	3	12	
		%	4.2	5.1	3.6	4.5	
	10만 미만	응답	10	19	8	37	
		%	20.8	13.9	9.6	13.8	
	20만 미만	응답	11	51	25	87	
		%	22.9	37.2	30.1	32.5	
	30만 미만	응답	13	40	32	85	
		%	27.1	29.2	38.6	31.7	
	40만 미만	응답	3	15	11	29	
		%	6.3	10.9	13.3	10.8	
	40만 이상	응답	9	5	4	18	
		%	18.8	3.6	4.8	6.7	
	합		응답	48	137	83	268
			%	100.0	100.0	100.0	100.0

p=.019

(6) 생활보호사업 미신청 또는 미수혜 사유

〈표 62〉 생활보호사업 미신청 또는 미수혜 사유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 사업 미수혜 이유	생활보호대상에 해당 되지 몰라서	응답	18	22	18	58	
		%	36.7	21.0	24.3	25.4	
	신청방법을 몰라서	응답	9	25	17	51	
		%	18.4	23.8	23.0	22.4	
	소득기준액 초과	응답	9	11	8	28	
		%	18.4	10.5	10.8	12.3	
	재산기준액 초과	응답	2	4	3	9	
		%	4.1	3.8	4.1	3.9	
	호적상 부양의무가 없어서	응답	1	9	5	15	
		%	2.0	8.6	6.8	6.6	
	절차가 까다로와	응답	7	22	14	43	
		%	14.3	21.0	18.9	18.9	
	자존심 때문에	응답		3	2	5	
		%		2.9	2.7	2.2	
	기타	응답	3	9	7	19	
		%	6.1	8.6	9.5	8.3	
	합		응답	49	105	74	228
			%	100.0	100.0	100.0	100.0

p=.731

(7)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표 63〉 생활보호사업 문제점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계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생활보호 사업의 문제점	자원액이 부족하여	응답	41	89	65	195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	43.6	45.4	50.4	46.5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함	응답	34	57	36	127
		%	36.2	29.1	27.9	30.3
	신청 및 수급 행정절차 너무 까다로움	응답	15	41	19	75
		%	16.0	20.9	14.7	17.9
	기타	응답	4	9	9	22
		%	4.3	4.6	7.0	5.3
합	응답	94	196	129	419	
	%	100.0	100.0	100.0	100.0	

p=.539

(8)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이제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저소득 실업장애우들에게 있어서 생활보호사업은 매우 기초적인 생계유지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 생활보호사업에 대해 모르는 실업장애우가 30.3%에 이르고 있고
- 생활보호사업을 아는 자 가운데 신청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54.2%인 365명이며
- 다시 이들은 생활보호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70.6%, 29.4%의 비율로 신청하였으며
- 신청자 가운데 280명만이 사업대상자로 되었고 나머지는 탈락하였으므로 탈락율이 24%정도에 달하며
-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받는 지원액은 가구당 평균 194천원이고 유형별로는 IMF형이 216천원, IMF이전이 180천원, 만성실업자가 203천원에 이르고

- 생활보호사업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해당유무를 본인이 정확히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 생활보호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액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한 불만을 지닌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공공근로사업

(1) 공공근로사업의 인지 여부

〈표 64〉 공공근로사업 인지 여부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계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근로사업 인지여부	알고있음	응답	105	216	180	501
		%	80.2	80.6	70.6	76.6
	모름	응답	26	52	75	153
		%	19.8	19.4	29.4	23.4
합	응답	131	268	255	654	
	%	100.0	100.0	100.0	100.0	

p=.015

(2)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부

〈표 65〉 공공근로사업 신청 여부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근로사업 신청여부	신 청	응답	51	90	41	183
		%	41.1	34.6	17.4	29.3
	미신청	응답	73	170	199	442
		%	58.9	65.4	82.6	70.7
합		응답	124	260	241	625
		%	100.0	100.0	100.0	100.0

p=.000

(3)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표 66〉 공공근로사업 참여 여부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근로 사업참여 여부	참여함	응답	19	28	11	58
		%	35.8	29.8	24.4	30.2
	신청하였으나 탈락	응답	30	56	29	115
		%	56.6	59.6	64.4	59.9
	자진포기	응답	4	10	5	19
		%	7.5	10.6	11.1	9.9
합		응답	53	94	45	192
		%	100.0	100.0	100.0	100.0

p=.000

(4)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표 67〉 공공근로사업 미신청 이유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응답	14	25	24	63	
		%	17.5	12.8	11.7	13.1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되어서	응답	10	35	32	77	
		%	12.5	17.9	15.5	16.0	
	신청해도 안될것 같아서	응답	6	19	17	42	
		%	7.5	9.7	8.3	8.7	
	일의 내용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응답	1	1	1	3	
		%	1.3	0.5	0.5	0.6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없어서	응답	37	103	120	260	
		%	46.3	52.6	58.3	53.9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응답	4	8	2	14	
		%	5.0	4.1	1.0	2.9	
	기타	응답	8	5	10	23	
		%	10.0	2.6	4.9	4.8	
	합		응답	80	196	206	482
			%	100.0	100.0	100.0	100.0

p=.162

(5)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 가운데 핵심인 바, 실업장애우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정리하여 본다

- 우선 공공근로사업을 모르는 실업장애우는 전체의 23.4%에 해당되며
-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27.2%인 183명이고 이중 공공근로사업에 직접 참여한 장애우는 신청자의 31.7%인 58명.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6%에 불과하다. 특히 신청하였

으나 탈락한 자들이 신청자의 62.8%에 해당함으로써 장애우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의 문이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다.

- 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은 그 사유를 장애우에게 적합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53.9%에 이르고 이밖에도 신청할 자격이 안되거나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등이 조사되었다.

### 3) 실업급여

#### (1) 실업급여 신청 여부

〈표 68〉 실업급여 신청 여부

항 목		유 형 별	실 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적자	IMF이전의 실적자	
실업급여 신청여부	현재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응답	8	-	8
		%	15.1	-	4.9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	응답	7	3	10
		%	13.2	2.7	6.1
	퇴직당시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응답	11	45	56
		%	20.8	40.9	34.4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응답	3	10	13
		%	5.7	9.1	8.0
신청하지 않음	응답	24	52	76	
	%	45.3	47.3	46.6	
합		응답	53	110	163
		%	100.0	100.0	100.0

p=.000

#### (2)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표 69〉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항 목		유 형 별	실 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적자	IMF이전의 실적자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응답	13	23	36
		%	40.6	25.6	29.5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응답	5	18	23
		%	15.6	20.0	18.9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격이 안되어서 (자발적 이직, 해고)	응답	3	8	11
		%	9.4	8.9	9.0
	고용보험의 내용을 몰라서	응답	6	21	27
		%	18.8	23.3	22.1
	신청하여도 안될 것 같아서	응답	1	9	10
		%	3.1	10.0	8.2
	곧 취직될 것 같아서	응답	2	3	5
		%	6.3	3.3	4.1
기타	응답	2	8	10	
	%	6.3	8.9	8.2	
합		응답	32	90	122
		%	100.0	100.0	100.0

p=.631

(3) 공공직업훈련 경험 유무

√ <표 70> 공공직업훈련 경험 유무

항 목		유 형 별	실적자유형		전 체
			IMF형 실적자	IMF이전의 실적자	
공공직업훈련 경험유무	받은 적이 있다	응답	7	37	44
		%	5.8	14.7	11.8
	받고 있다	응답	4	1	5
		%	3.3	0.4	1.3
	받은적이 없다	응답	109	214	323
		%	90.8	84.9	86.8
합		응답	120	252	372
		%	100.0	100.0	100.0

p=.004

(4) 공공직업훈련 참여 종류

<표 71> 공공직업훈련 참여 종류

항 목		유 형 별	실적자유형		전 체
			IMF형 실적자	IMF이전의 실적자	
공공직업 훈련내용	실업자 재취직 훈련	응답	4	4	8
		%	33.3	9.8	15.1
	고용촉진훈련	응답	4	5	9
		%	33.3	12.2	17.0
	대학 등 직업훈련	응답		1	1
		%		2.4	1.9
	기능사 양성훈련	응답	1	8	9
		%	8.3	19.5	17.0
	영능희망자훈련	응답		3	3
		%		7.3	5.7
	농어민고용촉진훈련	응답		2	2
		%		4.9	3.8
	실직자창업훈련	응답		3	3
		%		7.3	5.7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에서의 훈련	응답	3	12	15
		%	25.0	29.3	28.3
	기타	응답		3	3
		%		7.3	5.7
합		응답	12	41	53
		%	100.0	100.0	100.0

p=.257



(5) 직업훈련 희망 여부

〈표 72〉 직업훈련 희망 여부

항 목		유 형 별	실적자유형		전 계
			IMF형 실적자	IMF이전의 실적자	
직업훈련 희망여부	그렇다	응답	75	139	214
		%	62.0	55.6	57.7
	아니다	응답	21	40	61
		%	17.4	16.0	16.4
	잘모르겠다	응답	25	71	96
		%	20.7	28.4	25.9
합		응답	121	250	371
		%	100.0	100.0	100.0

p=.279

(6) 희망 직업훈련 종류

〈표 73〉 희망 직업훈련 종류

항 목		유 형 별	실적자유형		전 계	
			IMF형 실적자	IMF이전의 실적자		
희망직업 훈련내용	창업을 위한 훈련/교육	응답	17	27	44	
		%	21.8	18.9	19.9	
	자영업자의 사업능력향상훈련	응답	15	19	34	
		%	19.2	13.3	15.4	
	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양성훈련	응답	24	23	47	
		%	30.8	16.1	21.3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훈련	응답	4	13	17	
		%	5.1	9.1	7.7	
	컴퓨터관련교육	응답	15	53	68	
		%	19.2	37.1	30.8	
	기타	응답	3	8	11	
		%	3.8	5.6	5.0	
	합		응답	78	143	221
			%	100.0	100.0	100.0

p=.023

(7)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전반적 평가

임금근로자에게 있어서 실업 후 제1차적으로 적용되어 생활유지의 주요수단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는 금번 조사대상이 된 실업장애우에게 있어서는 매우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전체 조사대상 장애우의 2.7%인 18명만이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급여대상자가 아니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공직업훈련의 경우는

- 직업훈련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49명으로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7.3%에 해당하며.

- 이에 비하여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214명에 달해 31.8%에 해당하였고 명백히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는 61명에 불과하다.

- 희망하는 교육훈련 종류에는 컴퓨터관련 교육이 가장 많은 데 주로 취업을 위한 양성훈련, 창업을 위한 훈련 등을 원하고 있다.

#### 4) 실업자 대부사업

##### (1) 대부사업의 인지 여부

〈표 74〉 대부사업 인지 여부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사업 인지여부	알고있음	응답	75	159	84	318
		%	58.1	58.5	33.7	48.9
	모름	응답	54	113	165	332
		%	41.9	41.5	66.3	51.1
합	응답	129	272	249	650	
	%	100.0	100.0	100.0	100.0	

p=.000

##### (2) 대부사업 신청 여부

〈표 75〉 대부사업 신청 여부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사업 신청여부	신 청	응답	25	40	22	87
		%	30.1	24.2	22.4	25.1
	미신청	응답	58	125	76	259
		%	69.9	75.8	77.6	74.9
합	응답	83	165	98	346	
	%	100.0	100.0	100.0	100.0	

p=.463

##### (3) 신청대부사업 종류

〈표 76〉 신청대부사업 종류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신청대부 사업내용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응답	12	19	9	40
		%	48.0	44.2	37.5	43.5
	주택자금 (전세용자금 포함)	응답	5	10	5	20
		%	20.0	23.3	20.8	21.7
	생업자금	응답	8	9	9	26
		%	32.0	20.9	37.5	28.3
	관리:기술적실업자등 의 소규모영업지원 (벤처기업)	응답	-	5	-	5
		%	-	11.6	-	5.4
	귀농자 정착지원	응답	-	-	1	1
		%	-	-	4.2	1.1
	합	응답	25	43	24	92
		%	100.0	100.0	100.0	100.0

p=.225

(4) 대부신청 후 실제 대출 여부

〈표 77〉 대부신청 후 실제 대출여부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부신청후 대출여부	받 음	응답	6	16	6	28
		%	20.7	34.8	25.0	28.3
	못받음	응답	23	30	18	71
		%	79.3	65.2	75.0	71.7
합		응답	29	46	24	99
		%	100.0	100.0	100.0	100.0

p=.385

(5) 대출금액 규모

〈표 78〉 대출금액 규모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출금액	500만원 미만	응답		2	1	3	
		%		14.3	16.7	11.5	
	500-1,000만원 미만	응답	4	8	3	15	
		%	66.7	57.1	50.0	57.7	
	1,000-1,500만원 미만	응답	1	3	2	6	
		%	16.7	21.4	33.3	23.1	
	1,500-2,000만원 미만	응답	1			1	
		%	16.7			3.8	
	3,000만원 이상	응답		1		1	
		%		7.1		3.8	
	합		응답	94	196	129	419
			%	100.0	100.0	100.0	100.0

p=.686

(6) 대출받지 못한 이유

〈표 79〉 대출받지 못한 이유

항 목		유 형 별	실 직 자 유 형			전 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대출받지 못한 이유	담보가 없어서	응답	11	14	7	32
		%	47.8	37.8	33.3	39.5
	신용보증인 이 없어서	응답	6	9	7	22
		%	26.1	24.3	33.3	27.2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2		2
		%		5.4		2.5
	재산세 과세액 초과	응답	1		1	2
		%	4.3		4.8	2.5
	신청서류의 자격요건 미달	응답	4	6	1	11
		%	17.4	16.2	4.8	13.6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응답		3	1	4
		%		8.1	4.8	4.9
	기타	응답	1	3	4	8
		%	4.3	8.1	19.0	9.9
합		응답	23	37	21	81
		%	100.0	100.0	100.0	100.0

p=.507

(7) 대출신청을 안한 이유

〈표 80〉 대출신청 안한 이유

항목	유형별	실직자 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 실업자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구체적인	응답	15	25	15	55
	참여방법을 몰라서	%	23.1%	16.7%	16.5%	18.0%
	구직등록을 하지	응답	1	1	4	6
	않아서	%	1.5%	.7%	4.4%	2.0%
	자격요건이 안되서	응답	11	35	15	61
		%	16.9%	23.3%	16.5%	19.9%
	신청절차가	응답	20	44	24	88
	까다롭고 힘들어서	%	30.8%	29.3%	26.4%	28.8%
	상환부담때문에	응답	13	26	19	58
		%	20.0%	17.3%	20.9%	19.0%
	별도움이 안될 것	응답	4	12	8	24
	같아서	%	6.2%	8.0%	8.8%	7.8%
	기타	응답	1	7	6	14
		%	1.5%	4.7%	6.6%	4.6%
합	응답	65	150	91	306	
	%	100.0%	100.0%	100.0%	100.0%	

p=.600

(8) 대부사업의 문제점

〈표 81〉 대부사업 문제점

항목	유형별	실직자 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 실업자		
대부사업의 문제점	대출금액이	응답	1	4	3	8
	너무적음	%	1.2%	2.4%	3.1%	2.3%
	재산요건담보등	응답	50	95	50	195
	자격조건이	%	61.7%	56.2%	51.0%	56.0%
	너무까다로움	응답	11	25	11	47
	행정절차가	%	13.6%	14.8%	11.2%	13.5%
	너무까다로움	응답	2	10	5	17
	이자율이 높음	%	2.5%	5.9%	5.1%	4.9%
	대부후 상황까지	응답	7	12	3	22
	기간이 짧음	%	8.6%	7.1%	3.1%	6.3%
	모르겠다	응답	10	16	24	50
		%	12.3%	9.5%	24.5%	14.4%
	기타	응답		7	2	9
		%		4.1%	2.0%	2.6%
합	응답	81	169	98	348	
	%	100.0%	100.0%	100.0%	100.0%	

p=.071

(9) 대부사업에 대한 평가

실업자 대부사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장애우들의 생각은

- 우선 대부사업자체를 모르는 장애우가 응답조사자의 50%가 넘는 332명에 이르렀고
-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 등 대부사업에 신청한 장애우는 87명, 전체 응답자의 12.9%에 불과하였으며

- 대부신청후 대출을 받은 자는 28명에 해당되어 결국 대부사업의 수혜자는 전체의 4.2%에 그치며, 대부를 받은 자의 평균 대부금액은 78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부를 받지 못한 사유로는 담보가 없거나 신용보증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 신청절차가 까다롭거나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 신청을 아예 하지도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 이러한 자격조건이나 행정절차의 까다로움이 대부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으로 응답자에 의하여 지적되었다.

5) 새로운 정부프로그램

(1) 긴급의료비 지원

<표 82> 긴급 의료비 지원

항목	유형별	실적자 유형			전체	
		IMF형 실적자	IMF이전의 실적자	만성실업자		
긴급의료비 지원	매우필요	응답	60	135	126	321
		%	51.7%	54.2%	55.8%	54.3%
	필요	응답	30	71	66	167
		%	25.9%	28.5%	29.2%	28.3%
	보통	응답	19	31	22	72
		%	16.4%	12.4%	9.7%	12.2%
	불필요	응답	6	7	9	22
		%	5.2%	2.8%	4.0%	3.7%
	전혀불필요	응답	1	5	3	9
		%	.9%	2.0%	1.3%	1.5%
	합	응답	116	249	226	591
		%	100.0%	100.0%	100.0%	100.0%

p=.717

(2) 긴급식품권 지원

<표 83> 긴급식품권 지원

항목	유형별	실적자 유형			전체	
		IMF형 실적자	IMF이전의 실적자	만성실업자		
긴급식품권 지원	매우필요	응답	34	103	82	219
		%	30.1%	41.5%	36.6%	37.4%
	필요	응답	43	92	85	220
		%	38.1%	37.1%	37.9%	37.6%
	보통	응답	27	41	45	113
		%	23.9%	16.5%	20.1%	19.3%
	불필요	응답	8	9	9	26
		%	7.1%	3.6%	4.0%	4.4%
	매우불필요	응답	1	3	3	7
		%	.9%	1.2%	1.3%	1.2%
	합	응답	113	248	224	585
		%	100.0%	100.0%	100.0%	100.0%

p=.488

(3) 구직활동비 보조

〈표 84〉 구직활동비 보조

항목	유형별	실직자 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구직활동비 보조	매우필요	응답	51	111	90	252
		%	44.3%	45.5%	40.5%	43.4%
	필요	응답	34	83	70	187
		%	29.6%	34.0%	31.5%	32.2%
	보통	응답	25	38	43	106
		%	21.7%	15.6%	19.4%	18.2%
	불필요	응답	3	7	13	23
		%	2.6%	2.9%	5.9%	4.0%
	전혀불필요	응답	2	5	6	13
		%	1.7%	2.0%	2.7%	2.2%
	합	응답	115	244	222	581
		%	100.0%	100.0%	100.0%	100.0%

p=.563

(4) 세금 및 공과금 감면/면제

〈표 85〉 세금 및 공과금 감면/면제

항목	유형별	실직자 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세금, 공과금 감면/면제	매우필요	응답	59	114	134	337
		%	51.3%	58.5%	60.6%	57.9%
	필요	응답	39	72	58	169
		%	33.9%	29.3%	26.2%	29.0%
	보통	응답	12	24	20	56
		%	10.4%	9.8%	9.0%	9.6%
	불필요	응답	3	5	8	16
		%	2.6%	2.0%	3.6%	2.7%
	전혀불필요	응답	2	1	1	4
		%	1.7%	.4%	.5%	.7%
	합	응답	115	246	221	582
		%	100.0%	100.0%	100.0%	100.0%

p=.619

(5) 다양한 구인정보제공

〈표 86〉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

항목	유형별	실직자 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	매우필요	응답	46	101	66	213
		%	40.7%	43.0%	31.4%	38.2%
	필요	응답	31	79	67	177
		%	27.4%	33.6%	31.9%	31.7%
	보통	응답	27	38	58	123
		%	23.9%	16.2%	27.6%	22.0%
	불필요	응답	4	15	14	33
		%	3.5%	6.4%	6.7%	5.9%
	전혀불필요	응답	5	2	5	12
		%	4.4%	.9%	2.4%	2.2%
	합	응답	113	235	210	558
		%	100.0%	100.0%	100.0%	100.0%

p=.023

(6) 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

〈표 87〉 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

항목	유형별	실직자 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의료대책 중 가장 필요한 것	의료보험혜택	응답	11	116	10	37
		%	9.6%	6.2%	4.4%	6.2%
	월의료보험료	응답	31	64	48	143
		%	27.2%	24.8%	21.1%	23.8%
	보건소의 무료(실비)치료	응답	22	40	50	112
		%	19.3%	15.5%	21.9%	18.7%
	긴급의료비지원	응답	25	80	73	178
		%	21.9%	31.0%	32.0%	29.7%
	보장구 무료제공 및 수리	응답	20	48	39	107
		%	17.5%	18.6%	17.1%	17.8%
	기타	응답	5	10	8	23
		%	4.4%	3.9%	3.5%	3.8%
	합	응답	114	258	228	600
		%	100.0%	100.0%	100.0%	100.0%

p=.381

(7) 새로운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실업대책 프로그램 중 긴급의료비, 긴급식품비 등 몇가지를 응답자에게 제시해 본 결과

- 긴급의료비의 필요성은 82.6%가, 긴급식품비는 75.0%가, 구직활동비 보조는 75.6%가, 체세 공과금의 면제나 감면은 86.95%가, 다양한 구인정보제공은 69.9%가 동의하였다.

- 그리고 장애우에 대한 의료대책으로서 긴급의료비 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그리고 의료보험료 감면 및 보건소의 무료진료, 보장구 무료 제공 및 수리 등이 절실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6) 실업대책의 개선사항

(1) 실업대책의 기본 방향

〈표 88〉 실업대책 기본방향

항목	유형별	실직자 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 실업자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고용유지, 창출대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응답 52	85	51	188
		% 43.0%	31.4%	21.8%	30.0%
	생활안정대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응답 69	186	183	438
		% 57.0%	68.6%	78.2%	70.0%
합		응답 121	271	234	626
		% 100.0%	100.0%	100.0%	100.0%

p=.000

(2)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표 89〉 고용안정대책의 핵심사업

항목	유형별	실직자 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의 실직자	만성실업자	
고용안정 대책 중 핵심사업	직업훈련	응답 5	26	13	44
	프로그램의 확대	% 7.5%	19.4%	16.9%	15.8%
	공공직업소개, 취업 정보망 확충	응답 9	16	6	31
		% 13.4%	11.9%	7.8%	11.2%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	응답 35	53	34	122
		% 52.2%	39.6%	44.2%	43.9%
	기업 고용안정지원	응답 7	12	9	28
		% 10.4%	9.0%	11.7%	10.1%
	개인의 사업자금융자	응답 11	26	14	51
		% 16.4%	19.4%	18.2%	18.3%
	기타	응답	1	1	2
		%	.7%	1.3%	.7%
합		응답 67	134	77	278
		% 100.0%	100.0%	100.0%	100.0%

p=.596



(3)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표 90> 생활안정대책 중 핵심사업

항목	유형별	실직자 유형			전체	
		IMF형 실직자	IMF이전 실직자	만성 실업자		
생활안정 대책 중 핵심	공공근로사업	응답	4	12	5	21
		%	4.7%	5.5%	2.5%	4.2%
	고용보험 대상확대 및 수준제고	응답	1	2	2	5
		%	1.2%	.9%	1.0%	1.0%
	의료보험료 50%지원	응답	3	12	8	23
		%	3.5%	5.5%	4.0%	4.6%
	생활보호확대	응답	26	85	93	204
		%	30.6%	38.6%	46.7%	40.5%
	생계비대부사업확대	응답	15	34	34	83
		%	17.6%	15.5%	17.1%	16.5%
	장애인관련서비스 확충	응답	16	53	39	108
		%	18.8%	24.1%	19.6%	21.4%
	생업자금 융자	응답	18	20	15	53
		%	21.2%	9.1%	7.5%	10.5%
	노숙자 보호	응답	1	1		2
		%	1.2%	.5%		.4%
	각종상담사업	응답	1	1	2	4
		%	1.2%	.5%	1.0%	.8%
	기타	응답			1	1
		%			.5%	.2%
합	응답	85	220	199	504	
	%	100.0%	100.0%	100.0%	100.0%	

p=.147

(4)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이 된 저소득 실업장애우들은 현재의 실업대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 먼저 현재의 실업대책을 고용유지에 중점을 둘 것인가, 생활안정대책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고 극단적으로 물었을 때 30.0%와 70.0%로 응답하여 생활안정대책이 더 요구된다고 하였다.

- 고용안정대책 가운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이 당연히 가장 우선시되며 이외에 개인 사업자 금융자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차례로 요구하였다.

- 또한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는 생활보호사업의 확대가 가장 먼저 선호되었고 장애우관련 서비스의 확충이나 생업자금융자 등의 순으로 요구되었다.

# 실업장애우를 위한 정책과제

권선진(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장애우 실업대책의 필요성

IMF 관리체제 이후 장애우 실업률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장애우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임금근로 장애우의 경우에도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일차적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체수단의 확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애우 실업은 매우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부분적으로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어, 일반 실업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지만 일단 실직된 장애우의 경우에는 재취업이 더욱 어려운 물론 고실업 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만성실업 장애우를 포함하여 장애우 실업문제는 앞으로도 주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애우의 실업은 1998년 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실업가구 2,771가구 중에서 장애우가 포함된 가구는 12.7%(장애인 실태조사의 장애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7.4%)로 일반인에 비해 장애우가 실업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의료비 부담에 따른 병원이용의 기피 등 가족생활에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본 [실업장애우 실태조사]에서도 실업후 생계유지의 어려움, 부채의 증가, 가족관계의 악화 등이 장애우 실직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장애우 실직에 대응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장애우 실업문제에 대해 일반인의 관심은 물론 구체적인 접근방

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그나마 단편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되어 왔다.

이러한 IMF형 실직 장애우는 물론이고 장애를 이유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이나 직장 경합이 없는 실업장애우와 신규실업을 포함할 경우 장애우의 실업문제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단순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매우 포괄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우 실업문제는 생존권 위협과 직결된 매우 긴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 복지관과 시설로 되돌아오는 장애우 이러한 상황들이 IMF로 인한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이다. 따라서 장애우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은 장애우의 특성과 부가적인 욕구를 고려한 특별조치로서 그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 2. 장애우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 사회안전망의 조기구축을 통한 생활보장

- 장애우의 기초생활 보장
- 사회안전망 구축시 장애우의 특성을 반영

### 실업대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 장애우 실업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장애우 실업대책 협의체를 통한 공동대책의 수립과 실천

### 제도적 지원기반의 확충을 통한 실업완화와 고용증진

- 공공부문의 장애우 고용촉진과 민간업체에 대한 지원의 강화
- 장애우 실업 관련 거시지표의 생산 등 장애우 고용 인프라 구축

### 장애우의 실업유형과 욕구에 따른 대책의 수립

- IMF형 실업, 만성실업 등 실업유형과 장애특성을 반영한 대책의 수립
- 실직 장애우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충

## 3. 정책적 과제

### 1) 사회안전망의 조기구축을 통한 생활보장

-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의 조기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1차적인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대상자 확대, 급여수급 요건의 완화, 급여 수준의 향상이 필요함.

장애우의 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고용보험은 한시적인 소득대체의 기능을 할 수 있으나 지급기간이 2~7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생계대책이 될 수 없는 실정으로 단기적인 처방으로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제도로 발전되어야 함.

- 2차적 안전망인 공공부조에 있어서는 현금지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욕구를 감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장애우의 부가적인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생활보호대상자와 1998년 4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sup>1</sup>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있어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기회를 갖기 어려운 실업 장애우의 경제적 특성이 고려되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특히 본 조사결과 IMF형 실직 장애우의 경우 한시적 생활보호를 신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을 포기하거나 수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보장구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보장수준이 되도록 하고,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우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애우가 필요로 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긴급의료(82.6%), 식품권 (75.0%)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직 장애우와 가족의 지원방안으로써 3차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

실직장애우 모임터, 겨울나기 등의 프로그램과 무료급식, 의료비 감면 등 실업장애우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프로그램의 실시

## 2) 실업대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장애우 고용창출

-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반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특별취로사업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여 장애우에게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본 조사의 대상이 구직의사가 있는 실업 장애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의 신청률이 낮고(29%),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장애우에게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54%)가 높게 나타나 장애우에게 적합한 사업분야의 개발이 필요함(예컨대, 공동작업장이나 노출을 꺼리는 장애우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택근무가 가능한 분야 등).

현행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에 부적격자들이 참여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장애우에게 홍보가 되지 않거나 알고는 있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장애우가 비교적 용이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에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들 프로그램에 장애우를 우선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이들 기존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장애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단종 포함) 등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장애우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우는 전체의 12% 정도에 불과하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우는 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우의 욕구와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의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충함.

직업훈련 분야는 장애우의 요구도가 높은 분야, 예컨대 조사결과에서 나타나 있듯이 컴퓨터 관련교육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 분야, 기타 세부기능 훈련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장애우를 위한 훈련기관의 확충과 함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우에 대한 훈련수당 또는 구직활동비가 제공되어야 함.

한편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우를 위한 창업교육 과정을 설치하고, 이들 과정을 이수하는 장애우에 대해서도 교육훈련비를 지원함.

- 본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우의 요구가 높은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등 실업자 대부사업의 경우 실업장애우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대부조건이 까다롭고 담보(보증)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부사업에 있어서는 자격요건의 완화와 행정절차의 개선이 요구되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대상과 융자금을 확대하고, 자금지원 뿐만아니라 경영지도나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함.

또한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는 정부보증제도를 도입함.

## 3) 제도적 지원기반의 확충을 통한 실업완화와 고용증진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우 고용을 의무화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고용률이 1.15%(1998년)에 불과하고 또한 장애우 고용이 전무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2% 이상 장애우 고용을 달성하도록 강제화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시 장애우를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함.

각급 해당 기관에 대하여 장애우 채용계획과 그 이행실적 등을 보고하고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에 보여지고 있는 장애우 우선해고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바 최소한 현재의 장애우 고용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장애우 해고 또는 차별업체에 대해서 사업장 지도를 강화함.

- 전국적인 실업 장애우 파악을 통한 거시지표의 생산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우 실업대

책을 계획함.

장애우 실업의 문제는 IMF에 따른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요하므로 정확한 장애우 실업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단기 정책방안의 수립에 필요한 거시지표의 작성이 요구됨.

- 사회적으로 장애우 실업의 심각성을 알리고 당사자를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함.

정부 및 민간의 실업대책기구와 관련하여 장애우 실업대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애우실업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함.

이 협의회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장애인 관련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무형 지원 위주로 운영함.

- 장애우 고용 관련 정보망의 구축과 연계 활성화

장애우의 특성상 실업급여, 공공근로사업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절차나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연계망 구축이 필요함.

장애인복지관이나 단종복지관에 장애우 고용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노동부나 공단으로부터 취업에 관한 구인, 구직 정보 등을 연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실업장애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4) 장애우의 실업유형과 욕구별 대책의 수립

- IMF형 실직장애우나 이전 실직자의 경우 만성적인 실업장애우에 비해 경제적, 심리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들의 경우 취업욕구(89.5%)나 직업훈련 욕구(62.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예: 기업체 여건에 따라 해고장애우를 재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이와 함께 실직 장애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고통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심리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장애우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악화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해소를 위한 상담서비스, 실직장애우 쉼터, 한시적인 서비스의 확대 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실직 장애우와 가족의 고통을 해소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시함.

-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우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설치가 필요함.

생업자금 융자대상과 융자금을 확대하고,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기법이나 생산, 판매관리 등을 교육하고 사후관리와 평가를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단 등에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

안을 마련함.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자금융자 우선권을 부여하고, 한편으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공단 등에서 임대해 장애우가 일의 터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신규실업 장애우를 위한 대책으로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인턴사원 채용시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우에 대한 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채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함.

- IMF와 관계없이 취업이 어렵거나 장애를 이유로 취업을 포기한 만성적인 실업 장애우에 대해서는 장애우의 욕구에 기초하여 장애우와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응답자 편지

응답자중 별도의 편지를 동봉하여 보낸 경우가 많았음  
그 몇가지 내용을 수록한 것임.

김성재 이사장님

실직 장애인 권익문제에 귀기우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어도 장애인 비장애인이거나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암담한 세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직 장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전혀 없고 오히려 공급이 없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살고자하는 의욕마저 이미 희석 된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몇가지 부분에서 이미 그 타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됐다고 봅니다. 적어도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몇가지 문제점을 얘기해 보렵니다.

장애 등급과 연령에 상관없이 실직 장애인에 한해서는 대출을 해주되 보증인이 뚜렷한 사람에게만은 이유없이 자영업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고 장애인 사업장에 주어지는 보조금 등 장애인 개인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닌 개월수만큼 그 보조금으로 생활을 할수든지, 아니면 다른 기술을 학원에서 배운다면 정상인들에게 대우받고 장애인 역시 떳떳하고...

지금의 실업급여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원금에서 공제했는데도 서류 절차가 까다롭고, 장애인에게 실업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버스값도 없는 처지에 일일이 사업장을 찾아가 상대방의 자필과 싸인을 받아 오거나 라면 장애인을 기다리는 곳이 어디 쉬어야 할지, 한평생을 다 살아버린 이 나이에 누가 받게주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은 재재가 너무 많습니다. 혼자 살고 싶어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단축하다는 이유로 영구 임대 주택에 입주도 안되고, 회사에서도 다 똑같이 일을 했으나 가족 수당이라는 것도 못받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재산이 전혀 없고,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했는데(회사에 다닐때는 승회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하려도 자격이 없더니...

양하지 2급 장애인 본인은 차가 다니지 않아요. 물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를 팔아 빚을 갚아야 되겠지요. 허나 앞으로 회사입사할 확률은 전혀 없으므로 대출을 받려면 제적증명서를 어디서 떼겠습니까. 그렇다고 재산이 있습니까?

\* 지원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은 그때 임대차 계약서를 집주인으로부터 반납수가 없었지 않. 전세금 조건 걸어 놓은게 월세를 못주어 제하고 나니 아무것도 없고 형제집에 왔다갔다 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장애인 능력에 따라 일을 할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2종 장애인 운전면허 가지고 승용차는 운전할 수 있는데, 왜 영입용 택시는 안되는지 능력에 따라 면허를 허용. 개인택시 면허까지 허용하여 장애인 취업 사회생활에 참여도록 높였으면 합니다.

장애인 실직자는 재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종사 사업장을 발굴, 지원, 생산제품 판매를 지원해야 하며, 생산제품은 일반사업자와 구별하여 정부와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대주 32년생 000 입니다. 62년생 000, 63년생 000, 두 남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자식 00는 운전용 할 수 있고 타보고 고물차도 갖고 있습니다. 몇 년전 자식과 같이 자영업이라도 해보려고 동사무소에 용자도 신청해보았지만 국면은행에서 보증인 불충분으로 탈락했습니다. 이상태에서 그나마 소액을 갖고 노전장사도 이것저것 해 보았지만 구에서 노상인 딱지인 200만원내에서도 장사를 못하게 하죠. 정말 지쳐서 빚만 졌습니다. 가족이 모두 무능하다고나 할까요. 특혜로 우리같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공익시장이라도 제공해 줬으면 좋으련만 무료주차장은 여러군데 설치해놓고 장애인들의 생업터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노상인을 막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허면 버스표 파는 박스도 위에서 간부들이 차지하고 저희들을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권리금 챙기고 우리같은 장애가족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송합니다. 쓸데없는 뉘드리를 두서없이 하였습니다. 자식을 이렇게되고 심년동안을 어렵게 살다보니 그 누구라도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장애인 실직 조사 서류를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사정을 만나 실직자란 장애인을 위해 힘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26살에 남편과 사별했고, 제자식은 23살입니다. 00가 3살 때 경전장애로 가정이 심히 어렵습니다. 부모로서 자녀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실직과 장애란 엄마는 디스크로 어렵습니다. 동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적자를 몰라 어렵습니다. 장애 가정이나 실직자 가정에는 정부로부터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질환 어전이는 기금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뇌신경 마비 수술은 기금으로 수술이 안돼는지 길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보고 싶노라면 마음에 고통이 너무 아픕니다. 생활이 넉넉한 가정이면 수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23년 세월이 너무 힘들고 이제는 어머니까지 디스크로 일을 할 수 없고 너무 힘이 듭니다.

좀더 보호 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당당하군요. 교회와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살아왔는데 실직으

로 생계문제가 곤란합니다. 교회도 모든 분들도 도움에 손길이 끊긴 상태입니다. 적차출 물리서 킨 이 들고 혼자서 전전공공해야 하며 강강을 모르겠어유. 강을 알 수 있는 강이 없는지 해서 몇 자 적 었습니다. 정말 저의 일을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본 실태조사가 적극 반영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우들에 관해서 더 세련하고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일반인들 의식 자체가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생황보호보다 "땀을 흘린 자는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

직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장애우들의 공통적인 바램이겠지요.

그리고 각 장애인의 기능에 따라 알맞는 직장의 업무가 주어져서 근로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 시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한자는 생황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족하게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충직하게 일하는 자는 생황이 보장이 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

작년 98년 8월경 면사무소 복지계에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 먹던 것이어도 좋으니 쌀 1티백이라도 달라고 울며 매달려도 없다고 한라디로 자르더군요. 목인정하기에 들어서 나오는 뒤통수가 부끄러 윳습니다. 같이 계시지는 않지만, 장모님을 모신지가 10년 세월을 가늠합니다. 늙으신 노모님께 라 면을 돌리는 신정 이해하시겠지요.

장애인이 식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직장을 갖을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노전 이라도 할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게를 인대로 빌려줘서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 도 록 해줬음 좋겠습니다.

장애인 나이 40세가 넘으면 교육, 직업훈련 등 모든면에서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실제적으로 일할 의욕은 있으나 작업환경, 본인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참고 로 척수마비 환자들인 경우 하후의 나들이를 위해서 34일전부터 음식조절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 다.

영세면이 되었다가 18세 자녀가 있다고 탈락되고 보니, 장애인수당도 지급 안됩니다. 꼭 영세면이 어야만 장애인 수당이 지급되는지 이전전을 고쳐서 지급해주었으면 합니다.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장애인이라고 명시해가면서 대하도 안할려고 하니 취업의 문을 두들길수 없으니 이전전도 보완해 주었으면 합니다.

## 실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겨우나기를 위한 지원금이 선생님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선생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현재 실직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리 다양하지 않고,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긴급하게 해결해야할 '실직자' 대책은 가장 필요한 목구가 무엇인지, 이에 맞는 지원은 어떠한가 하는지가 파악돼야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대책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직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실태조사나 목구조사가 한번도 실시된 적 이 없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실직장애인 문제에 대한 혼라적인 정책 수립과 방언 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내용이 다소 길어 바쁘신 선생님께 번거로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성실하 고 정확한 답변은 바운 장애인의 실업대책과 실질적인 복지제도 마련에 중요한 바탕이 되 으니, 모든 질문에 빠진없이 성의있게 응답하시고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할 것이므로 응답내용에 관한 비명은 철저히 보장된 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동봉한 반송봉투를 이용하시어 가능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성재

정신지체인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팩스로 전송해 주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 (02) 521-5364 팩스 : (02) 584-7701

**1. 응답자 일반사항**

해당사항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거주지의 특성은?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촌, 어촌, 산촌
4. 귀하의 학력은(재학중이거나 중퇴 포함)?  
 ① 다니지 않았음  ② 초등학교  ③ 특수학교 초등부  
 ④ 중학교  ⑤ 특수학교 중등부  
 ⑥ 고등학교  ⑦ 특수학교 고등부  ⑧ 전문대  ⑨ 대학교이상
5. 귀하의 장애종류 및 등급은?  
 ① 지체장애  급  ② 청각·언어장애  급  
 ③ 시각장애  급  ④ 정신지체  급
6. 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7. 귀하의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총 명)  
7-1. 귀하는 가구주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의 댁에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다른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인포함) 몇 분입니까?  
 ① 예 ( 명)  ② 아니오
9. 귀하의 주택소유 형태는?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영구임대  ⑤ 기타( )

10. 귀하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실직전 사항**

→직업을 가진 경험이 없는 분은 23번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11. 귀하는 언제 직업을 잃으셨습니까? \_\_\_\_\_ 년 \_\_\_\_\_ 월
12. 귀하는 임금근로자(월급을 받는)이셨습니까?  ① 예 (12-1로)  ② 아니오(12-2로)

12-1. 임금근로자인 경우 종사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정규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12-2.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종사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④ 자영업자/고용주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

13.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가 및 기술자  ② 사무직  ③ 서비스 및 판매직  ④ 농업 및 어업직  
 ⑤ 기능직, 기계조작 및 조립직  ⑥ 단순노무직  ⑦ 노점, 좌판  ⑧ 관리행정직  
 ⑨ 기타( )

14. 귀하가 일했던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서비스업  ② 제조업  ③ 농림어업 및 임업  ④ 기타( )

15. 직장(사업장)의 규모는 어느정도였습니까?  
 ① 5인 미만  ② 5~9인  ③ 10~29인  ④ 30~99인  
 ⑤ 100~299인  ⑥ 300인 이상

16. 한달 평균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17. 귀하의 실직전 직장(자영업 포함)에서의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년 개월

18. 귀하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법정 퇴직금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받은 퇴직금 ( )원 ② 받지 못한 퇴직금 ( )원  
③ 퇴직금이 없음 ④ 해당없음

19. 직장을 그만두게 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때문에  
② 해고(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19-1번 문항으로)  
③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④ 일거리가 없음 ⑤ 근무시간 환경이 나빠서  
⑥ 기타 ( )

19-1. 귀하의 장애가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3. 실직후 건강상태 및 가족생활

20. 실직후 귀하의 생활에 변화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20-1. 건강이 악화되었다  
20-2. 장애정도가 더 심해졌다  
20-3.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21. 실직 후 귀댁의 가족생활 중 다음 항목들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21-1.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21-2 부채(빚)가 증가하였다  
21-3. 부부, 가족관계가 나빠졌다  
21-4. 학업·과외중단 등 자녀교육비 지출을 줄였다

22. 귀하 가구의 가족 중 실직 이후 질병을 앓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4. 실직후 경제사황

23. 귀댁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V)하여 주십시오.  
① 본인이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으로 ② 다른 가구원이 일하여 얻는 근로소득으로  
③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④ 그 동안의 저축으로  
⑤ 따로 사는 친척, 친지의 지원 ⑥ 종교단체 및 사회기관의 도움으로  
⑦ 이자, 집세 등 재산소득 ⑧ 실업급여  
⑨ 빚을 얻어서 ⑩ 이웃의 도움  
⑪ 영세민 생활보호사업 등 정부보조금으로 ⑫ 정부의 대부사업(생활안정자금 등)  
⑬ 공공근로사업 ⑭ 직업훈련수당  
⑮ 기타( )

23-1. 이중 가장 주된 생계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하나만 답해주시시오) \_\_\_\_\_

24. 귀하의 개인소득은 얼마입니까?(생계보조비, 공공근로, 결연사업, 건물세등 모든 소득을 포함)  
① 전혀없음 ② 10만원 미만 ③ 10~30만원 미만 ④ 30~50만원 미만  
⑤ 50~70만원 미만 ⑥ 70~90만원 미만 ⑦ 90만원 이상

25. 귀댁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액은 얼마입니까?  
① 30만원 미만 ② 31만원~50만원 ③ 51만원~99만원 ④ 100만원~149만원  
⑤ 150만원~200만원 ⑥ 200만원 이상

26. 실직 이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귀댁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나 감소하였습니까?  
월 ( ) 만원 정도

27. 귀댁이 한달동안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 ) 만원 정도



**5. 실직후 구직사황**

28. 귀하는 일자리를 찾기 원하십니까?

-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28-1으로)

28-1.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후 34번 문항으로)

- \_\_\_ ① 장애정도가 심해서 \_\_\_ ② 취업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_\_\_ ③ 건강이 악화돼서 \_\_\_ ④ 기타

29. 귀하께서 직장이나 일거리를 찾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 \_\_\_ ① 본인이 실직해서 \_\_\_ ②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_\_\_ ③ 소비지출이 늘어나서(자녀진학, 의료비 등) \_\_\_ ④ 빚 때문에  
\_\_\_ ⑤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_\_\_ ⑥ 기타 ( )

30. 일자리(일거리)를 찾으려고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다습니까? (모두 표시)

- \_\_\_ ① 실직자 모임터 방문 등 \_\_\_ ② 친구나 친지와 접촉하였다  
\_\_\_ ③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접촉하였다(30-1번 문항으로)  
\_\_\_ ④ 민간직업안내소(취업상담소)와 접촉하였다  
\_\_\_ ⑤ 일자리가 있는지 사업체를 찾아다니거나 연락하였다  
\_\_\_ ⑥ 장애인단체나 복지관에 가보았다.  
\_\_\_ ⑦ 장애인 채용박람회나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가 보았다  
\_\_\_ ⑧ 신문, PC통신(천리안, 인터넷)의 구인광고를 보거나 연락하였다  
\_\_\_ ⑨ 기타( )

30-1. 공공기관에 알아본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하셨습니까?(모두 표시)

- \_\_\_ ① 노동부 인터넷 사이트 \_\_\_ ② 노동부 지방사무소(지방청 포함) \_\_\_ ③ 인력은행  
\_\_\_ ④ 고용안정센터 \_\_\_ ⑤ 시군구 취업센터(읍면동 포함) \_\_\_ ⑥ 산업인력관리공단  
\_\_\_ ⑦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_\_\_ ⑧ 기타( )

31. 일거리나 직장을 찾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중요한 순서대로 세가지) ( ) ( ) ( )

- \_\_\_ ①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_\_\_ ② 취업 또는 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_\_\_ ③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_\_\_ ④ 장애때문에

- \_\_\_ ⑤ 제시된 사업 또는 수입(보수)이 적다 \_\_\_ ⑥ 작업환경이나 작업시간이 맞지 않다  
\_\_\_ ⑦ 나이가 너무 많다 \_\_\_ ⑧ 여성이라는 성차별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_\_\_ ⑨ 기타( )

32. 희망하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 )

33. 새로운 직장(일자리)에서 수입은 적어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 ) 만원

**6.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 다음은 정부의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34. 귀하는 생활보호사업 또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 38번 문항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란 최근 대량실업, 기업의 도산 등으로 급격한 소득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노숙자세대 등 위기가정에 대하여 경제상황이 개선되어 생계유지가 가능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의료비, 자녀학비, 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것을 말함."

35. 귀댁에서는 생활보호사업에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_\_\_ ① 예 → 35-1번 문항으로 \_\_\_ ② 아니오 → 36번 문항으로

35-1. 신청하셨다면 어느 생활보호사업에 신청하셨습니다습니까?

- \_\_\_ ① 일반생활보호사업 \_\_\_ ②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35-2. 신청후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_\_\_ ① 예 → 35-3, 35-4번 문항으로 \_\_\_ ② 아니오 → 38번으로 가시오

35-3. 어떤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생활비로 현금지원을 받음 ( )  
(2) 의료비 지원(의료보험료 면제 포함) ( )  
(3) 교육비 지원(학비 면제 포함) ( )

(4) 기타 ( )

35-4. 지원을 받는 액수는 모두 합하여 한달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 수금액 : ( 만 천원)

36 생활보호사업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활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 ②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몰라서
- ③ 소득기준액(월23만원)을 초과해서
- ④ 재산기준액(4,400만원)을 초과해서
- ⑤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없어서
- ⑥ 기타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 ⑦ 자존심 때문에
- ⑧ 기타( )

37. 생활보호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원액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 ② 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너무 엄격함
- ③ 신청 및 수급하는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움
- ④ 기타 ( )

\* 다음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38.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취로사업은 제외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39. 귀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취로사업은 제외됩니다)

- ① 예 → 40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41번 문항으로

40. 신청하셨다면, 귀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습니까?

- ① 예 → 40-1번 문항으로
- ②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③ 일할 수 있었으나 포기하였다

40-1. 어떤 종류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가장 최근을 기준)

( )

41. 귀하께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표시)

- ① 공공근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 ② 신청할만한 자격이 안되어서
- ③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
- ④ 일의 내용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 ⑤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이 없어서
- ⑥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어서
- ⑦ 기타( )

\* 다음은 고용보험(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및 자영자는 43번 문항으로)

42. 귀하께서는 가장 최근의 직장을 그만 두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받을 예정도 포함)
- ②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
- ③ 퇴직할 당시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 ④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42-1번 문항으로)
- ⑤ 신청하지 않았다 (42-1번 문항으로)

42-1. 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또, 신청하였지만 거절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 ②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 ③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자격이 안되어(자발적 이직, 징계해고, 가입기간 부족 등)
- ④ 고용보험의 내용을 잘 몰라서
- 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안될 것 같아서
- ⑥ 곧 취직이 될 것 같아
- ⑦ 기타( )

43. 귀하께서는 실직 이후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또는 현재 받고 있습니까?

- ① 받은 적이 있다 (43-1로)
- ② 현재 받고 있다 (43-1로)
- ③ 받은 적이 없다 → 44번 문항으로

43-1. 공공직업훈련을 받았다면 어떤 형태의 직업훈련을 받으셨습니까?

- ① 실업자 재취직 훈련
- ② 고용촉진 훈련
- ③ 대학 등 직업훈련
- ④ 기능사 양성훈련
- ⑤ 영농 희망자 훈련
- ⑥ 농어민고용 촉진 훈련
- ⑦(실직자) 창업훈련
- ⑧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훈련
- ⑨ 기타( )

44. 정부 또는 고용보험에서 직업훈련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면 직업훈련을 받으시겠습니까?

- \_\_\_ ① 그렇다 → (44-1번 문항으로) \_\_\_ ② 아니다 \_\_\_ ③ 잘 모르겠다

44-1. 어떤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 \_\_\_ ① 창업을 위한 훈련/교육 \_\_\_ ② 자영업자의 사업능력 향상 훈련(예, 미용기술, 회계 등)  
\_\_\_ ③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을 위한 양성훈련 \_\_\_ ④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 훈련  
\_\_\_ ⑤ 컴퓨터 관련교육 \_\_\_ ⑥ 기타( )

\*다음은 정부의 실업자를 위한 각종 대부(대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45. 정부의 실업자를 위한 대부(대출)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 47번 문항으로

45-1. 알고 계시다면 그 대부(대출)사업에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_\_\_ ① 예 → 45-2번 문항으로 \_\_\_ ② 아니오 → 45-5번 문항으로

45-2. 어떤 종류의 대부(대출)사업을 신청하였습니까?(두가지 이상 경우 신청금액이 큰 것)

- \_\_\_ ①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_\_\_ ② 주택자금(전세금 융자 포함) \_\_\_ ③ 생업자금  
\_\_\_ ④ 관리 기술직 실업자 등의 소규모 영업 지원(벤처기업 지원 포함) \_\_\_ ⑤ 귀농자 정착지원

45-3. 신청하였다면 대출을 받으셨습니까?

- \_\_\_ ① 예: 총( )만원 \_\_\_ ② 아니오 (45-4번 문항으로)

45-4.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 \_\_\_ ① 담보가 없어서 \_\_\_ ② 신용보증인이 없어서 \_\_\_ ③ 주택전용면적 초과  
\_\_\_ ④ 재산세 과세액 초과 \_\_\_ ⑤ 신청서류의 자격요건 미달 \_\_\_ ⑥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_\_\_ ⑦ 세대주가 아니라서 \_\_\_ ⑧ 구직등록 후 3개월 혹은 1개월이 되지 않아서  
\_\_\_ ⑨ 기타 ( )

45-5.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_\_\_ ①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몰라서 \_\_\_ ②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서  
\_\_\_ ③ 자격요건이 안 되어(세대주자격, 주택/재산 등 요건) \_\_\_ ④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신용보증인 제도 등)

- \_\_\_ ⑤ 상환부담 때문에(이자율이 너무 높고, 상환기간이 너무 짧음)  
\_\_\_ ⑥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_\_\_ ⑦ 기타 ( )

46.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대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_\_\_ ① 대출금액이 너무 적음 \_\_\_ ② 재산요건 담보/보증인요건 등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로움  
\_\_\_ ③ 신청에서 대출받기까지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움 \_\_\_ ④ 이자율이 높음  
\_\_\_ ⑤ 대부후 상환까지의 기간이 짧음 \_\_\_ ⑥ 모르겠다  
\_\_\_ ⑦ 기타 ( )

\* 다음은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47. 다음과 같은 사업이 귀하 가구에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 정도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
1) 긴급의료비 지원 (극빈실업자, 노약자, 북한 난민 등 빈곤자에게 의료증서를 교부하고 이것을 상품권처럼 가격을 표시,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부대책)					
2) 긴급식품권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한 가격이 표시된 식품증서를 교부)					
3) 구직활동비(교통비 등) 보조 (구직을 위해 이동할 수 있도록 여비, 숙박비, 기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					
4) 세금 및 공과금 감면/면제					
5) 타지역 구인정보제공 (통합전산망) (실직자들에게 다양한 지역의 구인정보 제공)					

48. 장애인실업자를 위한 다음의 의료대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가지만 골라 표기 하십시오.

- ① 실업전 가입한 의료보험혜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
- ② 월 의료보험료 50% 감면
- ③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무료치료 또는 실비이용 확대
- ④ 긴급의료비 지원
- ⑤ 보장구 무료제공 및 수리
- ⑥ 기타 (            )

※ 다음은 실업대책의 우선순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49. 다음 중 어떤 것이 귀하의 의견에 더 가깝습니까?

- ① 생활안정대책보다는 고용유지 창출대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49-1번 문항으로)
- ② 고용유지 창출대책보다는 생활안정대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49-2번 문항으로)

49-1. 다음의 고용안정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② 공공직업소개/취업정보망 확충
- ③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     ④ 기업 고용안정 지원
- ⑤ 개인 사업자금 융자     ⑥ 기타 (            )

49-2. 생활안정대책 중 귀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공공근로사업     ② 고용보험 대상확대 및 수준제고
- ③ 의료보험료 50% 지원     ④ 생활보호 확대
- ⑤ 생계비 대부사업 확대     ⑥ 장애인 관련서비스 확충
- ⑦ 생업자금 융자     ⑧ 노숙자 보호(쉼터)
- ⑨ 각종 상담사업     ⑩ 기타 (            )

50. 귀하께서는 정부가 특별히 장애인을 위하여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장애인수당 지급
- ② 보장구 지급
- ③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 ④ 편의시설 확충
- ⑤ 수용시설입소기회 확대
- ⑥ 복지관, 재활원 등 이용시설 이용기회 확대
- ⑦ 가정봉사원제도 및 방문간호제도 확대
- ⑧ 기타 (            )

51. 이밖에도 귀하께서는 장애인실직자를 위해 어떤 제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기관 : 시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전화 : (02) 521-5364  
 전속 : (02) 584-7701  
 통신 : 전, 나) COWALK  
 홈페이지 : <http://www.cowalk.or.kr>  
 값 : 3,000원